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환경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반영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환경 관련 건강 피해의 건강영향조사 청원, 건강영향조사반 구성 및 운영,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조례 제정 의미를 확실히 하고, 종전 조례의 “관리계획” 용어를 “지역계획” 으로 정비하며, 건강영향조사 청원이 있는 경우 조사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른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를 통해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